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6.1.26(화) 10:00

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#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4일

## 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재단명칭 변경 반영 및 중소기업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 변경(제4조제2항)

- 중소기업대상 선정을 위해 운용중인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

나.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 변경(제8조제2항)

- 2015.1.1.일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으로 재단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 반영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중소기업대상 선정을 위해 운용중인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업무를 관장하

는 부지사로 개정함은 물론 2015년 1월 1일자로 충청북도중소기업  
종합지원센터가 충청북도지방기업 진흥원으로 재단명칭이 변경됨에  
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